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10호

2017. 10. 24.(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박우양 의원 등 6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7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우양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재원 (안 제4조)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 추가
(기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변경)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신설 (안 제4조)

-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14. 08. 12일자)에 따라 청주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됨으로, 이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조정교부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지방세법 시행령 136조(과세대상)

개정 전	개정('14. 08. 12.) 후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전력</u>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u>은 제외한다.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 제외 대상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것임.

-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
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를 신설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별도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0
----------	-----

발의연월일 : 2017년 9 월 29 일

발 의 자 : 박우양,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윤은희, 이광희,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재원 (제4조)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 추가
(기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변경)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나. 화력발전

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신설 (제4조)

- 도지사는 화력발전
- 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생략함.

라. 협의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과 협의함.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 ----- ----- ----- ----- -----.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1. ----- (<u>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u>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